

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이하 "카카오뱅크"라 한다)와 고객이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이 약관을 인터넷홈페이지 및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에 게시하고, 고객은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 예금 및 적립식 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제 2 조 실명거래

- ① 고객은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②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거래방법

고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실사용자로 등록된 법인명의 스마트폰 포함)에 설치한 카카오뱅크 모바일앱 · 인터넷뱅킹 등(이하 "모바일앱"이라 한다)을 통하여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카카오뱅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센터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 현금자동입출금기 · 컴퓨터 · 전화기 등(이하 "전자적 장치"라 한다)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 4 조 전자서명, 비밀번호 등의 신고

- ① 고객은 거래를 시작할 때 전자서명, 비밀번호,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가 따로 정하는 예금은 계좌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 조 입금

- ① 고객은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자기앞수표로 계좌송금(고객이 모바일앱 이외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 3 자가 모바일앱이나 다른 금융기 관 등을 이용하여 고객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고객 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다.
- ② 자기앞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카카오뱅크는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 6 조 예금이 되는 시기

- ① 제 5 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 1.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예금원장에 입금을 기록한 때
 - 2. 자기앞수표로 계좌송금한 경우 : 계좌송금을 처리한 금융기관이 자기앞수표를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받은 때
- ② 카카오뱅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1 항의 확인 또는 기록처리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자기앞수표의 부도

카카오뱅크는 제 6 조 제 1 항에 따라 입금된 자기앞수표가 지급 거절되었을 때에는 그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해당 은행의 부도어음 통보에 따라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뒤 해당 은행으로 반환 처리하며, 고객(또는 입금의뢰인)이 신고한 연락처로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 이자

-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 6 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카카오뱅크가 정한 금리로 셈한다.
- ② 카카오뱅크는 예금종류별 예금금리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리를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모바일앱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1 개월 동안 게** 시하다.
- ③ 제 2 항에 따라 금리를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금리를 적용하며,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계약 당시의 금리를 적용함



- 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금리를 적용한다.
- ④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 시 **금리적용 방법을 모바일앱에서 안내**하며, 또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금리를 바 꾼 때마다 **바뀐 금리를 모바일앱에서 안내**한다.
- ⑤ 고객이 실제 받는 이자는 제 1 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 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 9 조 휴면예금 및 출연

- ① 카카오뱅크는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 년 이상 경과한 예금
 - 나.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 년 이상 경과한 예금
- ② 제 1 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 40 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예금 을 동법 제 45 조에 따라 지급청구 할 수 있다.
- ③ 예금계약은 예금이 제 1 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 잔액이 0 원으로 된 예금이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다.

제 10 조 지급, 해지청구

- ① 고객이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전자서명된 지급 또는 해지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이 자동이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1 조 지급시기

-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고객이 요청할 때 지급한다.
- ②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이후 고객이 요청할 때 지급한다.

제 12 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 ① 카카오뱅크는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고객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의 요청이었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 ② 제 1 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 ③ 제 1 항의 지급정지기간은 지급 정지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카카오뱅크는 10 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카카오뱅크가 제 1 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객에게 지급정지 사실과 이의신청 절차를 유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며, 고객이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카카오뱅크가 정한 민원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⑤ 고객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 ⑥ 카카오뱅크는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해지하여야 한다.
- ⑦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된 경우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 1 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양도 및 질권설정

- ① 고객이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사전에 카카오뱅크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 14 조 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 ① 고객은 모바일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또는 카드 등을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에는 곧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전자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신고는 카카오뱅크가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



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고객 본인이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 15 조 모바일앱 재등록, 카드의 재발급 등

제 14 조에 따라 **모바일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또는 카드 등**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카카오뱅크는 신고인이 고객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등록하거나 재발급한다.**

제 16 조 통지방법 및 효력

- ① 카카오뱅크는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고객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카카오뱅크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고객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고객에게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② 카카오뱅크가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③ 카카오뱅크는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고객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고객이 제 14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 조 면책

- ① 카카오뱅크는 모바일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고객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청구서, 신고서, 위임장 등을 제출받는 경우 해당 서류에 찍힌 인영 또는 서명이 인감증명서에 따른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따른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그 외 비밀번호 등 본인확인을 위하여 입력 또는 제출받은 정보가 사전 신고된 고객의 정보와 동일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카카오뱅크가 고객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모바일앱 및 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카카오뱅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전자서명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고객에 손해가 생겨도 카카오뱅크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카카오뱅크가 고객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고객이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 우 카카오뱅크는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 ④ 카카오뱅크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한 계좌는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고객에 손해가 생겨도 카카오뱅크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고객이 제 14 조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카카오뱅크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카카오뱅크는 고객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 18 조 수수료

- ① 고객이 전자적 장치 또는 다른 금융기관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카카오뱅크는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② 카카오뱅크는 제 1 항의 경우 외에도 고객이 **제신고, 부가서비스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 1 항, 제 2 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19 조 오류처리 등

- ① 카카오뱅크가 예금원장이나 계좌 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20 조 예금의 비밀보장

- ① 카카오뱅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전자적 장치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고객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1 조 약관의 변경

- ① 카카오뱅크는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 개월 전에 한달간 그 내용을 **모바일앱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고객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 개월 전에 제 1 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 알린다.
 - 1. 고객이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SMS,MMS,메신저 등)에 의한 통지

2. 모바일앱 초기화면에 게시

- 3. 고객과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앱푸쉬, 알림톡 등)에 의한 통지
- ③ 제 1 항의 게시 또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 1 항의 게시 또는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한다.
- ④ 제 3 항의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고객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22 조 약관적용의 순서

- ① 카카오뱅크와 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 식·적립식 예금 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 23 조 기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제 24조 이의제기

고객은 카카오뱅크와의 은행거래와 관련 하여 이의가 있을 때 카카오뱅크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 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5 조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 가입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 이후 가입고객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5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의 개정된 내용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거치식예금 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 ① 거치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양도성예금증서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 2 조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고객이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이자

-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이하 "모바일앱"이라 한다)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금리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고객이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모바일앱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만기후금리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 ③ 고객이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모바일앱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 ④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금리를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금리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특약

제 1 조 약관의 적용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 거래는 이 특약이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약관」,「예금거래기본약관」,「거치식예금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제 3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 17 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제 4 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 백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 5 조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되, 월, 일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금리적용

이 예금은 가입일(또는 자동연장일) 당시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이하 "모바일앱"이라 한다)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금리를 적용합니다.

제 7 조 금리쿠폰

카카오뱅크는 이 예금에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금리쿠폰을 발행 및 지급할 수 있으며, 금리쿠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 1. 카카오뱅크는 이벤트 등을 통해 금리쿠폰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 이 예금의 신규 시에만 금리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사용된 금리쿠폰의 우대금리는 이 예금의 계약기간 동안 제공합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또는 재예치한 계좌에 대해서는 금리쿠폰의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4. 금리쿠폰의 우대금리 및 적용 방식 등과 같은 세부사항은 발급된 금리쿠폰의 상세정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8 조 만기 시 자동해지

- ① 이 예금의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 고객이 만기 시 자동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는 만기일에 본인의 실명확인된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이하 "근거계좌"라 한다)으로 이 예금을 자동해지하여 입금처리 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만기일에 압류, 사고신고,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해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 9 조 만기 시 자동연장

- ① 이 예금의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 고객이 만기 시 자동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만기일에 세후 원리금을 재예치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만기를 최대 5 회까지 자동으로 연장합니다. 다만, 최종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근거계좌로 이 예금을 자동해지하여 입금처리합니다.
- ② 이 예금의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 고객이 만기 시 자동연장 SMS 통지에 동의한 경우에는 자동연장 1 개월 전과 자동연장일에 SMS 로 통지합니다.
-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예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 만기 시 자동연장 신청이 불가하며, 만기일에 압류, 사고신고,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기 시 자동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행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기 시 자동연장이 가능합니다.



제 10 조 긴급출금

이 예금의 긴급출금은 가입일(또는 자동연장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최대 2 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긴급출금 후 최소 유지금액은 100 만원 이상이어 야 하며 **긴급출금 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제 11 조 중도해지금리

만기일 전에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입일(또는 자동연장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또는 자동연장일) 당시 모바일앱 및 인터넷홈 페이지에 게시한 기간별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제 12 조 만기후금리

만기일 이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또는 자동연장일) 당시 모바일앱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기간별 만기후금리를 적용합니다.

제 13 조 제한사항

이 예금은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은 불가하나,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은 상속인이 카카오뱅크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부 칙 (2017. 5. 25.)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5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8. 7. 3.)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8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4. 9. 10.)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의 개정된 내용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특약

제 1 조 약관의 적용

비과세종합저축(이하 "저축"이라 합니다)의 거래 시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이하 "카카오뱅크"라 합니다)가 취급하는 각종 예금·신탁·채권 등(이하 '예금 등'이라 합니다)의 약관(특약 포함)과 「조세특례제한법」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조 가입대상자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 1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 만 65 세 이상인 거주자
- 2.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 2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6.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제 3 조 저축의 가인

이 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전 카카오뱅크에 가입자 등록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대상 예금

카카오뱅크가 취급하는 모든 예금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예금 등과 각 취급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예금 등은 제외합니다.

- 1.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이 가능한 예금: CD 등
- 2.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기 취급중인 비과세 예금 등

제 5 조 예치한도

- ① 이 저축으로 거래하는 모든 예금 등 계좌의 예치한도는 원금을 합하여 5 천만원(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5 천만원에서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이 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등은 1 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최종 이자원가로 인하여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한도에 포함합니다.
- ③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이 저축의 한도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예치한도 산정

- ① 거치식 예금 등은 가입자가 가입한 저축원금으로 합니다.
- ② 정액(정기)적립식예금 등은 월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③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자유적립식 및 추가불입이 가능한 거치식 예금 등은 저축가입자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7 조 예치한도 변경

이 저축의 예치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과세 처리

- ① 이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의 이자소득 등은 비과세 처리하고 **만료일 이후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제 2 조의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 15 조 과세특례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

③ 제 2 항에 해당되며 비과세 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카카오뱅크는 해당 금액을 추징하고, 추징한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저축가입자에게 통보합니다.

제 9 조 표시 방법

이 저축가입자는 신규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카카오뱅크는 거래내역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적용 이율

이 저축으로 가입한 각 예금 등의 적용이율은 개별 약관(특약 포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1 조 상속에 의한 특별중도해지

저축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카카오뱅크에 이 저축의 해지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카카오뱅크는 당초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신탁·채권 등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2 조 저축의 전환여부

이 저축과 이 저축이 아닌 예금 등은 상호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중복가입자에 대한 처리

제 12 조에 불구하고 가입자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중복하여 가입한 때에는 가입자가 이 저축으로 선택한 계좌 이외의 계좌에 대해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일반과세계좌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명의변경 등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

제 15 조 과세특례의 제한

이 저축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 개 과세기간 중 1 회 이상 「소득세법」제 14 조 제 3 항 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 준금액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과세특례 부적격 판정 통보 및 의견제시

- ① 카카오뱅크는 가입 시점에 가입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한 경우 가입을 제한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가입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국세청의 최초 통지 시점에 확인하며, 이 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립니다.
- ③ 이 저축가입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저축가입자의 사망, 해외장기출장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⑤ 제 3 항과 제 4 항에 따른 가입자의 이의가 수용되어 과세특례 자격이 적격으로 다시 판정되고 국세청이 이를 카카오뱅크에 통보한 경우 통보 내용에 따라 조치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특약은 2020 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적용대상) 제 2 조의 개정규정은 이 특약 시행 후 최초로 이 저축에 가입하는 자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특약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특약은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적용대상) ① 제 15 조는 이 특약 시행 후 이 저축에 가입하는 자부터 적용합니다.

② 제 16 조는 2020 년 2 월 11 일 이후 국세청이 과세특례 자격을 검증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특약은 2021 년 5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적용대상) 제 16 조의 개정규정은 2020 년 1 월 1 일 이후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